

광주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139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축산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 고 1. B

2. C

3. D

4. 원고 겸 망 E의 소송수계인 F

5. 망 E의 소송수계인 G

6. 망 E의 소송수계인 H

7. 망 E의 소송수계인 I

8. 망 E의 소송수계인 J

9. 망 E의 소송수계인 K

피고 2, 5 내지 9의 소송대리인 F

변 론 종 결 2021. 7. 6.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F, G, H, I, J, K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6. 8. 접수 제25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2013. 2. 27. 접수 제84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피고 F은,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377/544401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 J, K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0918/54440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9. 5. 30. 접수 제233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은, 피고 G에게 위 부동산 중 3474/544401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 F, J, K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316/54440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5. 30. 접수 제233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L에게 위 부동산 중, 피고 G은 19851/544401 지분, 피고 H, I, F, J, K은 각 13234/54440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12. 15. 접수 제582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원고는 2013. 2.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2. 27. 접수 제8441호).

(2) 피고 B은 2015. 6. 8.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15.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같은 등기소 2015. 6. 8. 접수 제25274호).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원고는 2013. 3. 11. L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중 6617/41877 지분에 관하여 2013.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3. 11. 접수 제10099호, 이하 위와 같이 L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지분을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이라 한다).

(2) E은 ‘원고가 E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L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3.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와 같은 2013. 3. 7.자 매매계약은 E 등 원고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L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L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2015가단34593), 2015. 10. 21. ‘L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L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전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L는 전소 판결 확정 후인 2015. 12. 15. E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같은 등기소 2015. 12. 15. 접수 제58261호).

(4) E은 2019. 5. 30.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1158/41877 지분에 관하여 2019.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같은 등기소 2019. 5. 30. 접수 제23357호), 같은 날 피고 F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5459/41877 지분에 관하여 2019. 5.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같은 등기소 2019. 5. 30. 접수 제23358호).

(5) E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7. 19. 사망하였고(이하 망 E을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G(상속지분 : 3/13), 자녀 피고 H, I, J, K, F(상속지분 : 각 2/13)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청구(피고 B, C)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2013. 2. 25. 매매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이고,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피고 B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므로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각각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청구(피고 D, F, G, H, I, J, K)

전소 판결의 확정에 따라 L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L는 망인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2015. 12. 10. 매매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이고, 피고 D, F 명의의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망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므로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D, F은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L에게 각각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L에 대한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L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1)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3. 2. 25.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가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의 채권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원고가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이 사건 제1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위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명한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 2)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한 전소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망인(채권자)과 L(수익자)에게만 미치고, 원고(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전소 판결의 효력을 주장하며 L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L를 상대로 위와 같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D, F, G, H, I, J, K에 대한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설령 원고가 L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부분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D, F, G, H, I, J, K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목 록

- 1. 경기 양평군 M 전 1236㎡
- 2. 경기 양평군 N 임야 41877㎡, 끝.

